

2026년도 산업통상협력개발지원(ODA)

사전타당성조사 공고

「산업통상협력개발지원사업 운영요령(산업부 예규)」에 의거, ‘26년도 산업통상협력개발지원(ODA: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) 사업 사전타당성조사를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참여를 원하는 기관은 본 공고문과 첨부 양식*에 따라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2026. 10. 2.
산업통상부 장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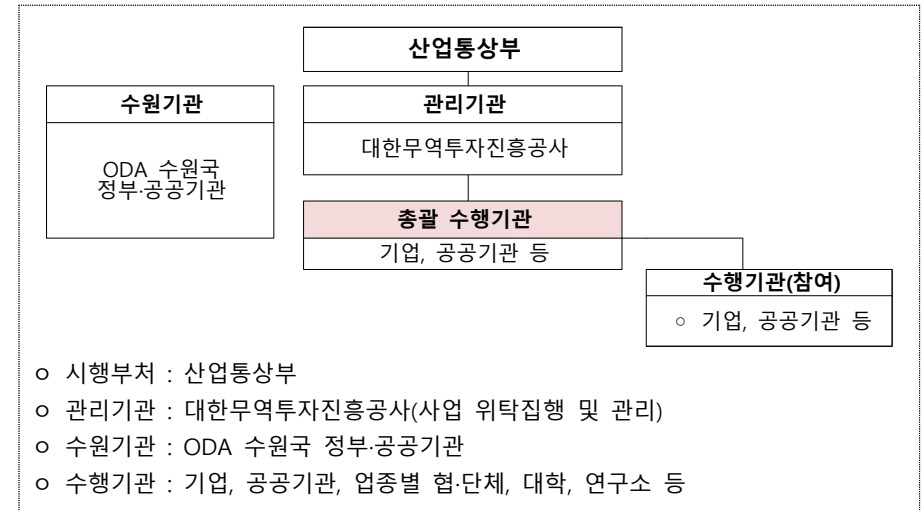
* 양식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홈페이지(<http://kotra.or.kr>)의 “사업신청” 참조

사업 개요

1 사업 목적

- 산업통상부는 개도국의 경제 발전과 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우리나라 강점 분야인 제조업 등 산업 분야 개발협력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
- 본 공고는 2028년 착수되는 신규 프로젝트 기획·발굴에 필요한 N-2년(사업 착수 2년 전) 사전타당성조사 지원 대상사업·수행기관 선정을 위한 것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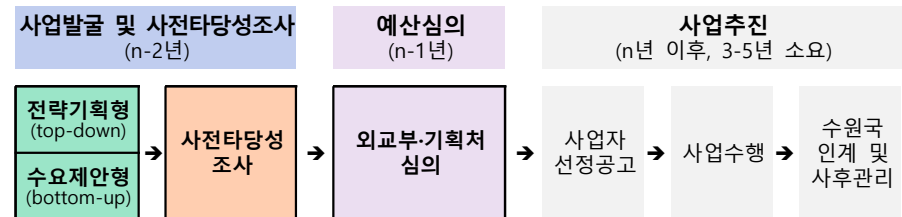
2 추진 체계



3 지원 기간 및 규모

- 지원 내용 : 신규 프로젝트 사전타당성조사에 소요되는 비용
- 지원 규모 : 각 과제 당 80-90백만원 내외
- 지원 대상 : 국내 기업·기관, NGO 등
- 수행 기간 : 과제 선정·협약체결 시 ~ 2027년 2월 28일
- 선정 과제 : 6개 내외

<신규사업 추진 절차>



4 추진 절차 및 일정

절 차	내 용	비 고	일 정
① 공모	<사업 공고>	산업통상부	'26.10.2. ~ 10.23.
② 신청·접수	<온라인 신청 및 서류 제출> • 사업계획서 및 관련 서류 * '26.10.13. 사업설명회 개최	총괄 수행기관→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	~ '26.10.23.
③ 선정평가	<선정 평가> • 선정평가위원회 서면 평가 → 선정평가 결과에 대한 부처 확정 → 최종선발 과제 안내	산업통상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(평가위원회)	'26.10.28. ~ 11.6
④ 협약체결	<협약체결> • 사업계획서 검토·확정 → 협약체결	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↔ 수행기관(총괄·참여)	'26.11월
⑤ 과제 수행	<과제수행> • 사전타당성조사 수행	수행기관(총괄·참여)	'26.11월~ '26.12월
⑥ 결과보고	<결과보고> • 사전타당성조사 결과보고서 제출	수행기관(총괄) →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	~'27.1월
⑦ 사업비 정산	<사업비 정산> • 사업비 사용실적보고서 제출 → 관리기관 정산(회계법인 위탁)	수행기관(총괄) →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	~ '27.2.14.
⑧ 평가	<평가> • 관리기관(평가위원회) 평가 및 보고	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→ 산업통상부	~ '27.2월

* 본 일정은 상황에 따라 부득이한 경우 변경될 수 있음

5 관련 법령 및 규정

- 국제개발협력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
-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및 동법 시행령
- 산업통상협력개발지원 운영요령

* 공고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내용은 위의 관련 법령 및 규정 준용

II

지원 내용

1 지원 개요

- (지원 유형) 전략기획형 및 수요제안형 2개 유형으로 구분

< '26년도 사전타당성조사 공모 개요 >

구분	전략기획형	수요제안형
추진 방향	▲국가 전략의 방향성과 일치 ▲산업·기업 진출에 마중물 역할	개도국 현지 수요 기반
지원 과제 수	4개 내외	2개 내외
필수 제출 근거	수원국 시장 진출·확장 계획	수원국 수요 관련 증빙
평가지표	전략성(70%), ODA적정성(30%)	ODA 적정성(80%), 시장 진출 효과(20%)

- (지원 내용) 신규 프로젝트 기획·사전타당성조사 수행 비용
- (지원 과제) 개도국의 경제 발전과 복지 증진 목적의 과제로서 우리 산업·기업의 수출·진출 지원과 연계할 수 있는 과제
 - (수원 기관) OECD DAC(개발원조위원회) 지정 수원국 정부·공공기관
 - (지원 분야) 우리나라 산업·경제 정책에 기반한 전략적 중점 분야

< 중점 추진 분야 >

- ▶ (공급망) 핵심광물(탐사, 선광, 정·제련 등), 소재·부품 등 공급망 확보 관련
- ▶ (AI·그린) 제조업 AI(M.AX), 친환경 전환 및 탄소 저감
- ▶ (인력양성) 뿌리산업(용접·금형), 조선산업 등 제조업 전문인력 양성
- ▶ (산업기술) ▲제조업종별 시범 생산시설 구축, 기술 전수 및 기업 간 협력, ▲에너지 분야 중 송·변전 케이블, 변압기 등 전력 기자재 구축 관련

* 성과가 불분명한 교류·행사 위주의 사업은 지원 지양

2 지원 분야

① 전략기획형 과제

- (추진 방향) 우리 기업의 개발도상국 진출 촉진을 위한 유망 협력 분야 아이템을 ODA로 연계한 세부 과제 기획
- (중점 분야) ①산업인력 양성, ②ESG 연계, ③제품 실증, ④핵심광물 공급망 등 전략적 경제협력 분야를 중심으로 선정

< 전략기획형 과제 중점 지원 분야 >

지원 분야	주요 내용
산업인력 양성	· 산업계 주도의 교육과정 개발, 강사 및 설비지원을 통해 우리 기업 필요 인력을 신속하게 공급하는 사업 발굴
ESG 연계	· 우리 기업의 지속가능경영 수요와 연계한 개도국 ESG 리스크 관리 사업 발굴 * Scope 3 탄소 배출 저감, 자원순환, 협력사 역량 강화 등
신흥시장 제품 실증	· 우리 기업의 현지 맞춤형 제품을 보급, 국민 인식을 제고하고 시장 진출 기반 및 실적을 제공하는 사업 발굴
핵심광물 공급망 안정화	· 우리 산업계의 핵심광물 공급원 다변화를 위한 신규 협력 거점 조성 사업 발굴

- (신청 자격) 총괄 수행기관은 기업 단독 지원 또는 대학, 공공기관, 연구기관, 협·단체, 他 기업 등과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지원 가능
- (공모 방식) 자유 과제

② 수요제안형 과제

- (추진 방향) 수원국 및 다자개발은행 요청 수요 및 기업·기관이 확인한 개도국 수요를 바탕으로 개도국 산업 발전 지원
- (지원 분야) 그린·기술·공급망·인력양성 등 사업 목적에 맞는 산업 통상 분야 개도국 무상 ODA 프로젝트 수요
- (신청 자격) 총괄 수행기관은 기업 단독 지원 또는 대학, 공공기관, 연구기관, 협·단체, 他 기업 등과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지원 가능
- (공모 방식) 수원국 수요가 확인된 자유 과제

* 단, 수원국 측 의사 확인 가능한 서류(LOI·MOU 등) 제출 필수

3 과제 공통 과제 범위

- 신규 프로젝트 기획 및 사전타당성조사 수행
 - 수원국 및 재외공관(최소 2회 방문)과 협력하여 관계자 협의(월 2회 이상)
 - 현지 출장(최소 3회)을 통한 관련 데이터수집 및 기초선 조사
 - 프로젝트 세부 추진계획, 소요 예산 상세 내역을 도출하고, 도출된 내용을 바탕으로 정량적·정성적 타당성 분석
 - 사전타당성조사 결과보고서, PCP 초안작성 및 수원국 접수 지원, 환경사회영향평가 설문지, 환경사회영향평가 및 조치계획(필요시) 등 과제 결과물 생산·제출
- 사전타당성조사 과제 결과물을 수원국 이해관계자에 공유
- 사업 추진을 위한 필수 요건* 마련 및 확보 지원 추진
 - * 수원요청서 확보, 협의의사록(RoD) 초안 작성, 무상 지원 기자재 통관·면세 사전협의

4 지원 대상 (신청자격)

- 각 과제 해당 분야에 전문성 및 국제협력 네트워크를 보유한 기관 (기업, 대학, 연구소, 협·단체 등)
- 총괄수행기관 단독 지원 또는 ‘기업, 협·단체, 공공기관, 연구기관’ 등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신청 가능
 - 단, 전략기획형 과제는 총괄 수행기관이 기업이어야 함
- 전략기획형 과제는 사업계획서의 별첨으로 기업의 신흥시장 진출 세부계획*이 포함된 자료를 제출해야 함
 - * 현지 법인/자회사/지사 설립, 생산(ODM/OEM 등) 협력, (시)제품 수출, 현지 기업 M&A 및 지분 투자, 임팩트 투자, 기술이전·전수 등 BM 및 협력내용이 포함된 자료 (계획서, 계약서 등) 필수 제출
- 수요제안형 과제는 사업계획서의 별첨으로 해당 수원국(또는 기관)의 추진 의사 증빙자료(MOU·LOI 등)를 제출해야 함

5 지원 기준

가. 사업비 산정

- 과제의 사업비는 정부지원사업비와 자기부담금으로 구성되며, 자기 부담금은 필수는 아니나 과제의 특성에 따라 자기부담금 산정할 수 있음
- 세부 사업비 산정, 사용, 정산은 「산업통상협력개발지원사업 운영요령 (산업부 예규)」 및 동 요령 [별표2] 사업비의 사용 용도 및 세부 산정 기준을 따름
- 사업비 편성 및 사용과 관련하여 향후 회계 정산 또는 상시 점검 등을 통해 불인정 회수 조치가 있을 수 있으므로 관련 규정을 잘 숙지하여 사업비 산정 및 사용 필요
- 사업비는 협약체결 후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(RCMS)을 통해서 지급 하며, 수행기관은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(RCMS)을 통해 사업비를 집행, 관리, 정산해야 함

나. 협약체결 및 과제 수행

- 협약체결은 관리기관-총괄기관-참여기관이 체결하며, 협약체결 및 과제 관리·수행은 수기로 진행

다. 수행기관 교육 및 수원국 현지 조사

- 과제 수행기관(총괄책임자)은 관리기관이 실시하는 수행기관 역량 강화 교육 및 과제수행 검토위원회에 참여하여야 하며, 과제수행 기간 중 수원국 현지 조사를 최소 3회 이상 실시하여야 함

라. 성과물의 귀속

- 「산업기술혁신 촉진법」 제13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제2항제2호,

「산업통상협력개발지원사업 운영요령(산업부 예규)」에 따라 동 사업의 과제수행을 통해 생산된 보고서, 통계자료 등 성과물은 공익적 목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국가의 소유로 함

마. 기술료 징수

- 「산업기술혁신 촉진법」 제12조 및 「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통합요령」 제4조제2항에 따라 동 사업은 수행기관에서 성과물의 실시를 목적으로 하지 않으며, 성과물에 대해 공개 활용이 필요한 경우로 기술료 징수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

바. 사후관리 및 성과활용현황보고서 제출

- 동 사업의 과제는 기획 및 사전타당성조사 과제이므로 사후관리 및 성과활용현황보고서 제출 대상으로 하지 않음

* 「산업통상협력개발지원사업 운영요령」 제38조(사후관리), 제39조(사업 종료 후 활용 보고)

6 지원 제외 처리 기준

- 관리기관은 사전검토를 실시하여 신청기관(총괄 및 참여기관)의 장이 제출한 사업계획서 및 첨부 서류를 확인하고 필요시 추가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
- 관리기관은 사전검토를 실시하여 대면평가 대상 여부를 결정하며, 「산업통상협력개발지원사업 운영요령」 [별표 1] 사전검토 및 평가 제외에 해당하는 경우는 지원을 제외함
- 「산업통상협력개발지원사업 운영요령」 제15조제2항에 따라 동 사업은 사전조사, 기획 및 평가연구 등에 관한 과제에 해당하며 동시에 수행하는 협력개발지원사업의 과제 수에 포함하지 않음

III 평가 절차 및 기준

1 평가 절차 및 방법

○ 평가 절차



* 상기 절차는 선정평가계획(안)에 따라 조정 가능

- 관리기관은 「산업통상협력개발지원사업 운영요령」 [별표1]사전검토를 실시하여 평가 대상 여부를 결정하며, 신청기관은 사전검토를 위한 관리기관의 요청에 협조하여야 함
- 평가위원은 ODA 전문가 및 산업기술전문가를 섭외하여 위촉하며, 사업계획서를 중심으로 평가하고 신청기관은 평가위원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거나 요청 시 추가 자료를 제출하여야 함

2 평가지표 및 기준

- 평가지표 : 선정평가는 아래의 평가지표에 따라 실시

< ①전략기획형 평가지표 및 기준 >

평가지표		평가 기준	배점
전략성 (70)	국가 전략 부합성 (10)	■ 우리나라 국가 전략의 방향성과 일치하는 사업인가?	10
	시장 진출 매력도 및 확장 가능성 (15)	■ 관련 산업에 대한 사업 대상 지역의 시장 형성 정도 및 성장 가능성이 충분한가? ■ 사업 대상 제품·기술의 수준이 해당 지역 진출·확장에 적정하고 경쟁력이 있는가? ■ 사업 대상 제품·기술의 산업적 생태계가 국내에 형성되어 있는가?	15
	진출·확장의 당위성 (15)	■ 기존 민간투자 및 상업 금융 등으로 해소되지 않은 애로 사항이 ODA 연계를 통해 해소되는가? ■ 제안 사업을 통해 우리 기업의 수출·투자 확대 구조 창출 또는 ESG·현지 채용 등 KPI 달성이 가능한가? ■ 사업 희망국 내 수입제한, 규제 등 각종 진입 장벽을 고려했을 때 우리 기업 진출·확장이 적합한 시장인가?	15
	진출·확장 계획의 구체성 (20)	■ 시장조사 및 규격·인증 획득 등 대상 지역 시장 진출·확장을 위한 우리 기업의 준비 계획이 체계적인가? ■ 동 사업과 연계한 민간 자금 조달, 후속 투자 연계가 가능한 구조로 사업이 설계되었는가?	20
	수행기관 역량 (10)	■ 제안 기관의 신흥국 수출·수주·진출 관련 역량이 높은가? ■ 제안 기관·총괄책임자의 수원국 이해도가 높은가? ■ 제안 기관·총괄책임자의 수원국 네트워크가 충분한가?	10
ODA 추진 적정성 (30)	수원국 수요 매칭 가능성 (10)	■ 수원국 파트너의 사업 추진 의지가 높은가? ■ 수원국 개발전략상 우선순위가 높은 사업인가?	10
	프로젝트 모델 체계성 (15)	■ 수원국 환경 및 대안이 적절히 분석되었는가? ■ 제안한 단계별 사업 논리가 체계적이고 달성 가능한가? ■ 수원환경 및 이해관계자 우선순위를 적절히 고려했는가?	15
	프로젝트 모델의 지속가능성 (5)	■ 사업 수행 및 성과 지속 저해 요인 대응책이 적절한가? ■ 종료 후 수원국 측의 자립적 운영이 가능한가?	5
총점			100

* 상기 평가지표 및 배점, 항목은 추후 조정 가능

< ②수요제한형 평가지표 및 기준 >

평가지표		평가 기준	배점
사업 추진의 적절성 (25)	개발재원 조달 타당성 (10)	- ODA를 통해 추진하는 것이 적절한 사업인가? - 우리 대외정책 상 우선순위가 높은 사업인가? - 우리나라가 지원하는 것이 경쟁력이 있는 사업인가?	10
	수원국 수요 타당성 (15)	- 수원국 파트너의 사업 추진 의지가 높은가? - 수원국 개발전략상 우선순위가 높은 사업인가?	15
프로젝트 모델 제안의 완성도 (40)	수원 환경 분석 적절성 (10)	수원국 환경 및 대안이 적절히 분석되었는가?	10
	프로젝트 모델 체계성 (20)	- 제안한 단계별 사업 논리가 체계적이고 달성 가능한가? - 수원환경 및 이해관계자 우선순위를 적절히 고려했는가? - 타 사업과 연계 및 시너지 효과가 기대되는 계획인가?	20
	프로젝트 모델 효율성 (5)	목표 달성 수단, 자원 배분, 일정이 적절한 계획인가?	5
	리스크관리 (5)	사업 수행 및 성과 지속 저해 요인 대응책이 적절한가?	5
타당성조사 계획의 충실도 (5)		- 프로젝트 모델 검증계획이 구체적인가? - 프로젝트 모델 검증계획이 현실적인가?	5
수행기관 역량 (10)		- 제안 기관·총괄책임자의 ODA 및 분야 전문성이 높은가? - 제안 기관·총괄책임자의 수원국 이해도가 높은가? - 제안 기관·총괄책임자의 수원국 네트워크가 충분한가?	10
시장 창출 기대효과의 적정성 (20)	시장 기반 지속가능성 (10)	- 사업을 통해 지원 분야 시장 접근성이 개선될 것인가? - 종료 후 수원국 측의 자립적 운영이 가능한가?	10
	민간 참여 촉진 효과 (10)	- 민간 참여 연계 계획의 목표가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가? - 민간 참여 연계 계획의 추진 전략이 체계적이고 지속 가능한가? - 민간 참여 연계의 경제적 파급효과가 적정한가?	10
총점			100

* 상기 평가지표 및 배점, 항목은 추후 조정 가능

- (우대사항) 대외경제협력기금(EDCF), 공급망안정화기금, 수출·개발금융 등 타 정책 금융과 연계 계획을 제안*하는 경우 등 가점 최대 3점 부여
- * 유·무상원조 및 타 재원의 연계 대상 사업의 존재에 대한 공식적 증빙 제출 필수

3 유의사항

- 개도국에 지원되는 기자재는 국산 또는 국내기업이 제조한 장비를 우선 조달·도입하는 것을 목표로 신규사업 기획을 권고함
- 다음의 경우에는 선정평가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
 - 공고 분야별 해당 조사 항목에 대해 작성되지 않은 경우
 - 공고된 사업계획서 양식(첨부)으로 작성·제출하지 않은 경우
 - 제안하는 기관장의 직인이 누락된 경우
 - 공적개발원조(ODA)의 기본 방침,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

IV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

1 신청 방법

- 양식교부 :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홈페이지(www.kotra.or.kr) 내 사업신청 페이지 참조
- 신청방법 : 사업계획서 및 첨부서류, 온라인 접수 (오프라인 서류 제출 불필요)
- 신청 서류 제출 : '26년 10월 23일(금) (전산접수 완료 기준)
- 문의 : KOTRA 개발협력실(oda@kotra.or.kr)
- 접수 유의사항

< KOTRA 홈페이지 접속 → 통합회원가입 → 온라인 접수 >

- ① 통합회원가입 : 총괄 수행기관 및 참여 수행기관이 관리기관 홈페이지(www.kotra.or.kr)에 등록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고, 등록이 되어 있지 않는 경우 신규 회원가입
- ② 온라인 접수 : 신청기관 및 사업계획의 공통적인 내용 일부를 기입하는 것으로, 신청 접수시 총괄 수행기관 총괄책임자가 직접 입력
- ③ 파일 업로드 : 신청 사업계획서 전체의 내용을 작성하여 업로드하는 것으로, 한글 등 문서파일로 양식을 다운받아 해당 내용을 작성한 후 KOTRA 사업신청페이지에 작성한 파일을 업로드

- * 전산등록 마감일에는 전산 폭주로 인하여 접수가 지연되거나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접수 완료 및 제출 요망. 또한, **안내된 전산접수 마감일 시각 이후 전산접수 불가(마감시간에 작성 중인 경우도 불가)**
- * 전산등록 시에는 총괄 수행기관의 총괄책임자가 로그인하여 전산등록(회원가입 필요)
- * 전산등록한 총괄책임자의 E-mail 및 휴대폰 번호를 통해 진행 일정 등이 안내되므로, 정확한 연락처 입력 必
- * 직인이 필요한 별첨 서식의 경우 스캔본 업로드를 원칙으로 함
- * 제출된 서류 및 사업계획서 등이 허위, 위.변조, 그 밖의 방법으로 부정하게 작성된 경우 관련 규정에 의거, 선정 취소 및 협약해약 등 불이익 조치함
- * 구비서류 미비 시 보완요청이 있을 수 있으며, 보완 미비 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
- * **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**

2 제출 서류

1. 사업계획서 1부
 - * 전략기획형은 기업의 신흥시장 진출 세부 계획을 별첨으로 필수 제출
 - * 수요제안형은 수원국의 추진 의사 증빙자료를 별첨으로 필수 제출
2. 신청 자격 적정성 확인서
3. 수행기관 대표의 참여의사 확인서
4. 개인정보 및 과세정보 제공활용 동의서
5. 과제수행 윤리·청렴·인권 및 보안서약서
6. 총괄책임자의 재직증명서
7. 수행기관(총괄/참여기관) 법인 및 사업자등록증 각 1부 (기관별 제출)
8. 수행기관(기업만 해당)의 최근 2개년 회계감사보고서 또는 재무제표

※ 온라인상 제출 서류 일부 누락 시 평가 대상에서 제외

V 사업설명회 및 문의처

1 사업설명회

- 일시 : '26년 10월 13일(화) 14시~16시
- 장소 : KOTRA IKP 1층 세미나실(서울 서초구 현릉로7)
- 참석자 : 산업통상협력개발지원(ODA)에 관심있는 기업, 기관 등
- 주요내용 : 2026년 산업협력ODA 사전타당성조사 공모 안내
 - * 국익에 기여하는 산업 ODA 추진방안, '전략기획형' 사업 안내 등

2 문의처

- 공고·사업 문의

지원 유형	담당자 문의처
① 전략기획형, ② 수요제안형	KOTRA 개발협력실 oda@kotra.or.kr

- 온라인 접수 문의

구분	담당자 문의처
KOTRA 무역투자 24 고객센터	KOTRA 고객센터 1600-7119

[붙임]

1. 사업계획서
2. 신청 자격 적정성 확인서
3. 수행기관 대표의 참여의사 확인서
4. 개인정보 및 과제정보 제공활용 동의서
5. 과제 수행 윤리·청렴·인권 및 보안서약서
6. ODA 수원국 목록
7. 산업기술분류표

/끝/